BlackRock

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제정:2009.3.9.

변경시행:2022.11.23.

제 1 조(목적)

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 58 조에 의거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

투자자로 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동법시행령, 동법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,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 및 블랙록 그룹의 관련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3 조(수수료의 종류)

- (1) 이 기준에서 "수수료"라 함은 집합투자기구 및 일임계약.자문계약에 적용되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아래 각호와 같이 구성된다.
- 1. 보수
-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- 나.판매회사보수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- 다.신탁업자보수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자로서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- 라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BlackRock

마.성과보수: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집합투자업자가 받는 금전(법 제 86 조, 법시행령 제 88 조 및 금융투자업규정제 4-65 조에 해당하고 집합투자규약에 정의된 경우에만 수령가능) 2.수수료

가.판매수수료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행위에 대한 대가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

나.환매수수료: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기간이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로서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환매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재산에 편입됨

다.투자자문수수료 및 투자일임수수료: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대가로서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투자자문계약서 및 투자일임계약서에 따라 지급됨

제 4 조(수수료의 부과기준)

- (1) 회사는 수수료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.
- (2) 회사는 유사전략, 동일구조의 집합투자기구와 비교하여 적정성 여부를 고려하여 수수료를 정하여야 한다.

제 5 조(수수료의 부과절차)

- (1) 회사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, 투자일임계약 및 투자자문계약에 대한 운용자산의 특성, 규모, 서비스수준 등의 여러 요건을 고려하여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회사경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.
- (2) 회사경영위원회에서 수수료에 대해 심의하는 경우, 관련 법규에서 수수료에 대해 정하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교부의무)

회사는 법 제 97 조에 따라,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수료에 관한 서면자료를 미리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BlackRock.

제 7 조(투자광고)

회사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, 집합투자업자, 집합투자재산을 보관.관리하는 신탁업자,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.투자중개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받는 보수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

제 8 조(수수료의 인상)

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의 인상을 위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제 190 조제 5 항에 의한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,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다만,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9 조(공시)

회사는 법제 58 조제 1 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제 10 조(협회에 대한 통보)

회사는 법제 58 조제 3 항에 따라 이 기준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금융투자업자별로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게 한다.

부칙

이 기준은 2009 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

부칙

이 기준은 2022 년 11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